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59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
나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제38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1년 3월 12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남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에서 20년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우수 장수 기업 선정 근거 마련
-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·변경사항 반영

나. 주요내용

-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예우 할 수 있도록 규정
(안 제4조, 안 제8조)

-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·변경사항 반영(안 제4조, 안 제5조)
 “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”을 “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
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로 변경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도내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
- 우수 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축적된 역량이 지역경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 구축 필요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4조, 안 제8조에서는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예우 규정을 두었으며, ‘우수 장수기업’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정하였음
- ☞ 2018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업력(제조업기준)이 12.2년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장수기업 선정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※ 선정대상 기준(20년 업력)

-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업력(제조업기준)은 12.2년에 불과
 10년미만 48.2% / 10년이상~20년미만 35% / 20년이상~30년미만 12.3% / 30년이상 4.5%

- 안 제4조, 안 제5조는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
 “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”을 “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
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로 변경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운영에 있어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”을 “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‘우수장수기업’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인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조제1항제7호의 ‘우수장수기업’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

제8조제1항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4조제1항제7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</p> <p>① 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이 선정한 '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'</u>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p> <p>6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5조(예우 및 지원)</p> <p>① 1. ~ 2. (생 략)</p> <p>3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을 유예한다.</p> 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</p> <p>① 1. ~ 3. (생 략)</p>	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</p> <p>①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</u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우수장수기업</u>」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인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5조(예우 및 지원)</p> <p>①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</p> 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</p> <p>①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84 342 424 383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44 633 783 790">4. 제4조제1항제7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</p>	<p data-bbox="842 315 1385 595">4. 제4조제1항제7호의 '우수장수기업'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</p> <p data-bbox="842 633 1377 786">5. 제4조제1항제8호----- ----- -----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기본법

제140조(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)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1.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특별징수의무자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4.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- 제4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신설
 - 제5조의 예우 및 지원 관련 예산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예우 및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으로 함
- 나. 추계 결과 : 50,000천원(도비 100%)
- 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수입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우수장수 기업 선정	50	10	10	10	10	10